

전주지방법원 2018. 11. 30 선고 2017가단28872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등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(유한) 정송

담당변호사 육현창

피 고 1. B

2.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성

변론 종결 2018. 10. 19.

판결 선고 2018. 11. 30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

가. 전북 임실군 D 임야 18,780㎡ 중 별지 도면 표시 46, 47, 48, 49, 50, 51,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바)부분 지상 건물 81㎡, 같은 도면 표시 30, 31, 32, 33, 34,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마)부분 지상 돌담 7㎡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,

나. 전북 임실군 E 전 856㎡ 중 별지 도면 표시 38, 39, 40, 41, 42, 43, 44, 45, 28, 29, 30, 34, 35, 36, 37,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지상 돌담 53㎡를 철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45, 44, 43, 42, 41, 40, 39, 38, 19의 각 점을 순차로

연결한 선내 (라)부분 55㎡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,
다. 전북 임실군 F 전 443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의 각
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32㎡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 수거하고, 같은 도면 표시 12, 11,
15, 16, 17, 18,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지상 비닐하우스 54㎡를 철거하고 위
토지를 인도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7. 6. 20. G 소유의 전북 임실군 E 전 856㎡(이하 '이 사건 제1토지'라고 한다), F 전 443㎡(이하 '이 사건 제2토지'라고 한다), D 임야 18,780㎡(이하 '이 사건 제3토지'라고 하고, 위 3필지의 토지를 합하여 '이 사건 각 토지'라고 한다)에 관하여 2017. 6. 13.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들은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 도면 46, 47, 48, 49, 50, 51, 4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바)부분 81㎡ 지상에 건물(이하 '이 사건 제3토지 중 (바)부분 건물'이라고 한다)을 건축하고, 같은 도면 30, 31, 32, 33, 34, 3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마)부분 7㎡ 지상에 돌담(이하 '이 사건 제3토지 중 (마)부분 돌담'이라고 한다),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38, 39, 40, 41, 42, 43,

44, 45, 28, 29, 30, 34, 35, 36, 37, 3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53㎡ 지상에 돌담(이하 '이 사건 제1토지 중 (다)부분 돌담'이라고 한다),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12, 11, 15, 16, 17, 18,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54㎡ 지상에 비닐하우스(이하 '이 사건 제2토지 중 (나)부분 비닐하우스'라고 한다)를 각 설치하고,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19,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 45, 44, 43, 42, 41, 40, 39, 38,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라)부분 55㎡ 지상에 수목(이하 '이 사건 제1토지 중 (라)부분 수목'이라고 한다),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 도면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32㎡ 지상에 수목(이하 '이 사건 제2토지 중 (가)부분 수목'이라고 한다)을 각 식재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1호증의 1, 2, 갑 5호증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2018. 8. 6.자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, 이 사건 제3토지 중 (바) 부분 건물, 이 사건 제3토지 중 (마)부분 돌담, 이 사건 제1토지 중 (다)부분 돌담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(나)부분 비닐하우스를 각 철거하고, 이 사건 제1토지 중 (라)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(가)부분에 각 식재된 수목을 각 수거하며,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들은 피고 C의 아버지이자 피고 B의 남편인 소외 H이 원고의 할아버지 Ⅰ 으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 중 (바)부분 건물의 건축을 허락받아 건축하여 이 사건 각토지를 점유하면서 수목을 식재하고 돌담 및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고, H 및 피고 C은 원고의 집안이 이 사건 부동산 인근 조상묘에서 시제를 지낼때마다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 사건

부동산의 사용료 지불에 갈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을 5호증의 기재만으로 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2) 피고들은 H부터 피고들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이 사건 제3토지 중 (바)부분 건물에서 생활하여 왔고, 원고의 아버지로부터 어떠한 이의제기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, 원고가 위 건물의 철거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,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H 및 피고들이 이 사건 제3토지 중 (바)부분 건물을 건축하여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면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하더라도, 원고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유량